

##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
----------	-----

제출년월일 : 1992. 12. .

제출자 : 대전직할시장

### 1. 제안이유

개정된 주차장법 (1991. 12. 14 법률 제4437호) 및 동법시행령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72호) 및 동시행규칙 (1991. 9. 5 건설부령 제492호, 교통부령 제958호)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 이내로  
강화 함. (안 제3조 제3항 제1호)

나. 국·공유지상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  
토록 함. (안 제18조의 3의 제2항 제1호)

다.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주차장 설치의  
활성화를 기함. (안 제18조의 4)

라.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50%를 경감 함(안 별표 1 : 비고)

마. 주차회전율의 제고와 도심집중차량을 방지하고 도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가기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료를 징수토록 함(안 별표 1 : 비고)

### 3. 참고사항

#### 가.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③ 路上駐車場管理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 및 第8條의2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駐車料金의 4倍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받을 수 있다.

#### 나.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2항

②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附設駐車場과 당해 施設物의 종류 및 規模, 一般의 利用時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다. 주차장법 제3조 제2항

② 駐車場整備地區안에 建築하는 駐車專用建築物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最小限度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建築法 第47條 내지 第49條 및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基準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② 법 第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專用建築物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最小限度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附說駐車場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페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나. 대지가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frac{36}{\text{도로의 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 마.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의 料率 및 徵收方法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의 效率的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駐車料金을 그 이용 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② 第1項의 規定에 駐車料金의 料率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중 “금액의 가산금”을 “금액의 4배 이내의 가산금”으로 한다.

제18조의 3 제2항중 1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4 제2호중 “60제곱미터이상”을, “4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제3호 중 “1,300%이하”를 “1,500%이하”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높이의 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되어,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frac{36}{\text{도로의 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 별표 1 ]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③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18조 4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 [ 별 표 1 ]

##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2시간 까지 (1구획30분기준)	2시간 초과 (1구획30분기준)	1 일 주 차 권	정기 주차권(월)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 급 지	500	1,000	8,000	104,000	69,000
2 급 지	200	400	3,200	41,600	27,700

## [ 비 고 ]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가. 4월 ~ 10월 08:00 ~ 20:00
  -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소요를 참작하여 직할시장이 지정해 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주차요금은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9.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본인명으로 등록된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항</p> <p>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하였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p>	<p>제 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항</p> <p>1. ----- ----- ----- ----- ----- <u>금액의 4배 이내의 가산금</u> -----</p>
<p>제 18조 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생략) ② (생략)</p> <p>1. 국.공유지상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u>(지하주차장은 제외)</u> 2. (생략)</p>	<p>제 18조 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삭 제) 2. (현행과 같음)</p>
<p>제 18조 4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p> <p>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u>60m<sup>2</sup> 이상</u> 3. 용 적 을 : <u>1,300% 이하</u></p>	<p>제 18조 4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p> <p>----- ----- -----</p> <p>1. (현행과 같음) 2. ----- : <u>45m<sup>2</sup> 이상</u> 3. ----- : <u>1,500% 이하</u></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로 또는 나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가. 대지가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p> <p>나. 대지가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math>\frac{36}{도로의 폭}</math> 배. 다만,</p> <p>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 1.8배 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 별 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원)				[ 별 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원)						
구 분	1회 주차권	1 일 정기주차권(월)	구 분	2시간까지 (1구획30분기준)	2시간초과 (1구획30분기준)	1 일 정기주차권(월)	주차권	주간	야간	
	1구획당30분마다	주차권 주간 야간								
1급지	500	6,000	75000	56000	1급지	500	1,000	8,000	104000	69000
2급지	200	2,400	30000	22000	2급지	200	400	3,200	41600	27700

[ 비 고 ]

1. ~ 6. (생략)

( 신 설 )

1. ~ 6. (현행과 같음)

7. 주차회전을 제고를 위하여 2시간초과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9.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보청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30분  
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제는 노외  
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  
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